

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86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0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상위 기관의 하수도 사용료 제도 개선 권고 및 차별적 용어 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의 소멸시효를 주민에게 유리하게 개선 (안 제29조의2)
-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정식 명칭이 미반영된 차별적 용어를 정비 (안 별표1 제2호)
- 다. 현행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
 - 1) 띄어쓰기 수정 : 안 제4조제2항제3호, 안 제8조제1항, 안 제8조제4항, 안 제12조제3항, 안 제15조제3항, 안 제17조제2호가목, 안 제18조제3항, 안 제18조제4항, 안 제27조제1항제3호, 안 제27조제1항제7호, 안 제29조2
 - 2) 용어 정비 : 안 제7조제2항, 안 제14조제1호, 안 제22조제2항제2호, 안 제16조제2항, 안 제20조제1항제2호나목

3. 참고사항

- 가. 개정조례안 : 붙임 1
- 나.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 2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 3
- 라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4
- 마.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 *입법예고기간 : 2025. 8. 20. ~ 9. 9.

바. 기타 참고사항

- 1) 현행조례 : 붙임 5
- 2) 방침결재문 : 붙임 6.

【붙임 1】

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 중 “「지하수법」 제7조”를 “「지하수법」 제7조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”를 “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”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”을 “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지체없”을 “지체 없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9항”을 “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9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2항 본문 중 “환불”을 “반환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2호가목 중 “「지하수법」 제7조”를 “「지하수법」 제7조”로 한다.

제18조제3항 전단 중 “검사유효기간”을 “검사 유효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「물환경보전법」 제38조의2”를 “「물환경보전법」

제38조의2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2호나목 중 “수회”를 “여러 차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새로이”를 “새로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제2호 단서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제3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”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9조의2 본문 중 “소멸시효는 「민법」 제163조”를 “소멸시효는 「민법」 제163조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연체금 및”을 “연체금,”으로, “징수금에 대해서는 「지방재정법」 제82조”를 “징수금과 과오납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82조”로 한다.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멸시효의 적용례) 제29조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소관부서		하 수 과
입	하수과장	배진국
안	하수행정팀장	박수정
자	담당자 (연락처)	고범일 (031-481-2458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사용개시 등의 신고) ① (생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·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「지하수법」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·이용의 허가 또는 지하수 개발·이용의 신고</p>	<p>제4조(사용개시 등의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지하수법」 제7조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7조(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원상복구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	<p>제7조(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그렇지 않다.</u></p>
<p>제8조(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) ①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</p>	<p>제8조(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) ①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<u>각호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~ 4. (생략)</p>	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·③ (생략)</p>	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④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을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④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⑤ (생략)</p>	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배수설비의 설치 등) ①·</p>	<p>제12조(배수설비의 설치 등) ①·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배수설비 설치자가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수설비의 접속을 완료한 후 <u>지체없이</u>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원상태로 돌려 놓아야 한다.[본조개정 2019.11.8.]</p>	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체 없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④ (생략)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배수설비의 유지·관리)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</p>	<p>제14조(배수설비의 유지·관리)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비의 유지·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</p> <p>1. <u>당해</u>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.[본호개정 2019.11.8.]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제15조(공공하수도의 사용료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라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(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) ① (생략)</p> <p>②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고서를 접수할 때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, 하수도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산하여 <u>환불</u> 또는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<u>해당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공공하수도의 사용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9항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16조(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반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③ ~ ⑥ (생략)</p>	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하수배출량의 산정)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.</p>	<p>제17조(하수배출량의 산정) ---- ----- -----.</p>
<p>1. (생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
<p>2.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.</p>	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가. 「지하수법」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·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</p>	<p>가. 「지하수법」 제7조 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나.·다. (생략)</p>	<p>나.·다. (현행과 같음)</p>
<p>3. (생략)</p>	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하수배출량의 조사) ①·② (생략)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</p>	<p>제18조(하수배출량의 조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2.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. 다만,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<u>당해</u> 시설의 건설비용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단서신설 2015. 01.01.></p>	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③·④ (생략)</p>	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7조(감면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·점용료·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.</p>	<p>제27조(감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1.·2. (생략)</p>	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
<p>3.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에 따른 수급자</p>	<p>3.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----- -----</p>
<p>4. ~ 6. (생략)</p>	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7.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</u>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</p>	<p>7.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</u>」 제38조제2항----- ----- -----</p>
<p>8.·9. (생략)</p>	<p>8.·9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~ ④ (생략)</p>	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9조의2(소멸시효) 사용료, 연</p>	<p>제29조의2(소멸시효) -----</p>

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9-865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10월 30일
제안자 : 도시환경위원장

수정이유

- 제출안의 소멸시효 적용례에서 정한 일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이에 대한 실무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부칙을 수정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소멸시효의 적용례를 삭제하며 부칙을 일괄 정비함.(부칙 제1조, 제2조)

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□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	부 칙 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</u> <u>공포한 날부터 시행</u> <u>한다.</u> <u>제2조(소멸시효의 적용례)</u> <u>제29조2의 개정규정</u> <u>은 2025년 7월 1일</u> <u>부터 적용한다.</u>	부 칙 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</u> <u>시행한다.</u>

□ 부대의견

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과오납 현황을 점검한 결과, 그 건수 및 금액이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.
- 이는 그간 행정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하수도 사용료가 관행적으로 부과되어 온 결과라 이해되므로, 우리시 하수처리 외 구역에 대한 요금부과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, 과오납금 환부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당한 환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하기 바람.